

外國企業의 特許管理事例

— 三菱레이온(株) —

1. 國籍：日本
2. 業種：레이온·스테폴纖維, 아크릴릭섬유, 폴리에스터섬유, 폴리폴로필렌섬유 등의 纖維製品 製造 販賣, 미터아크릴樹脂, ABS수지, 塗料用樹脂 등 合成樹脂製品의 製造 販賣, 住宅 PP 필름, 食品 등의 各種 關聯事業
3. 資本金：163億5,400萬圓
4. 從業員：5,400名
5. 特許部署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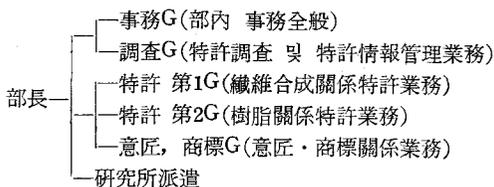
1933년에 新興人絹(株)으로 創業되어 스프專業生産業體로서 發展하여 오다가 1942년에 日本化成工業(株)에 合併하였고 다시 1944년에는 旭硝子(株)와의 합병과 더불어 三菱化成工業(株)이 되었다. 그후 1950년 6월 1일에 企業再建整備法에 따라 新光레이온(株)으로 分離獨立하였고 이어 1952년 12월에 現在의 三菱레이온(株)이 되었다.

特許業務는 三菱化成工業 當時부터 重要視하여 1950년 6월에 企劃部 企劃 第一課 特許係를 두었고 1956년 8월에는 企劃部 特許課가 되었으며 특허업무의 擴大에 따라 1965년 1월에 特許部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組織上的 位置는 技術開發部門에 屬하며 技術擔當業務의 指揮下에 三菱레이온뿐 아니라 三菱아세테이트(株) 등의 레이온그룹各社의 特許業務 全般을 處理하고 있다.

6. 特許部署 編制

主任部員制를 採用하고 男子 21명, 女子 9명 등 모두 30명이 다음의 編制로서 活動하고 있다.



7. 特許部署 特徵

經營에 直結한 特許의 事項을 隨時로 建議함을 前提로 他部와의 密接한 連繫下에 研究所, 纖維加工研究所

등의 研究陣과의 情報交換을 活潑히 取하고 發明이 發掘되면 早期出願에 힘쓰고 있다. 업무의 分擔은 素材別 從의 分擔方式을 主體로하여 機動的인 運用을 企圖하고 있다.

특허업무의 重點은 自社技術의 保護는 물론, 攻擊에 必要한 基本的 特許取得에 力點을 두고 出願前의 調査를 細密히 하며 公知技術과의 對比는 特許對策을 세워 특허를 點의으로 취득하지 않고 技術體系를 面的의으로 또는 立體的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특히 外國特許는 技術輸出이 可能한 특허의 취득을 先제로 對外技術戰略의 一環으로서 重點處理하고 있다.

8. 常時業務 處理方法

특허업무는 縱的方式에 따른 調査出願, 異議申請, 審初, 契約 등 擔當分野에 대해 그 擔當者가 取扱하게 되어 있으나 前項의 重點事項推進과 關聯하여 同社에서는 特許(實用新案 包含)運用基準을 定하고 特許面에서 본 研究開發方向 및 그 成果인 發明(公案)의 출원으로부터 年金 納付에 이르기까지의 一連의 節次를 各項目마다 運用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 概要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企業利益에의 直結을 先제로 他社의 關聯特許存否를 충분히 調査하여 特許的 檢討後에 着手한다.

② 국내출원은 연구성과가 權利로서 보호함을 先제로 研究者는 技報를 쓰는 정도의 明細書를 作成하되 제품관계는 實用新案權과 意匠權으로서의 보호도 고려한다.

③ 審査請求는 特例를 제외하고 出願日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 검토의 時期를 2회로 하고 2~5년(실용신안은 2~3년)과 5~7년(실용신안은 3~4년)으로 나누어 청구한다.

심사청구를 斷念하는 출원은 다음과 같다.

(1) 先行技術과 同一 또는 앞으로 容易하게 推察할 수 있는 것.

(2) 代替技術의 出現에 따라 技術內容이 陳腐化한 것.

(3) 工業化 혹은 擴大研究에 이르지 못하거나 數年以內에 到達이 豫見되지 않는것.

(4) 권리를 取得해도 타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明白한 것.

④ 審初請求는 查定の 理由가 不當하다고 判斷되고 또 公업화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의 重要部分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들의 기술에 관계하고 있는 경우에 局限한다.

⑤ 年金納付는 1~6年度는 모두 납부하고 7~10년도는 납부하지 않는 基準을 設定하며 11~15년도는 납부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處理한다.

⑥ 외국출원은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하여 有效한 특허로서 登錄可能性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발명만을 출원한다.

(1) 輸出하는 제품 또는 기술의 重要부분을 보호하는 것.

(2) 讓渡 또는 實施許諾에 따라 代價를 받음만한 것.

(3) 타사와의 계약에 관련하여 필요한 것.

(4) 客觀적으로 劃期的인 것.

9. 特許情報管理

特許管理는 情報管理에 重點을 두고 縱的 分擔方式과 調査機能을 連結하는 形態로서 對處하며 社內分類에 의거한 特許沙錄誌를 發行하여 精報傳達과 蒐集의 基礎資料로 삼고 있다.

外國精報의 入手와 利用을 圖謀하기 위해 CPI에 加入하여 필요한 분야의 情報를 購入하는 한편 IFI에도 가입하여 化學分野의 情報檢索을 可能케한다.

10. 商標管理

纖維製品, 樹脂商品 등을 販賣하는 企業으로서는 商標管理體制를 整備하여 販賣戰略에의 支援體制로 굳히고 現行 商標法에 따른 使用主義의 強化에 對應하는 社內 商標管理體制의 정비강화에 力點을 두고 있다.

11. 將來計劃

특허관리체제와 특허정보관리체제의 충실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27面에서 계속—

7. 審判·抗告審判請求·再審請求에 의한 參加申請 每건 3,500원, 8. 出願人名義變更申請 每건 1,000원

9. 補正書 제출

출원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의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면마다 1,000원

10. 期間懈怠免除申請 每건 2,500원

11. 出願公告猶豫 또는 意匠秘密保障의 請求

每건 5,000원, 12. 指定期間延長申請 每건 500원

13. 費用額決定의 請求 每건 300원

14. 執行文 正本의 請求 每건 150원

15.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유사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영업표등록증·업무표장등록증·연합상표등록증·연합영업표등록증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再交付申請이나 그 寫本의 交付申請 每건 300원

16. 각종 證明의 신청 每건 150원

17. 書類의 謄本, 抄本, 寫本의 교부신청 每1면 100원

18. 公報 또는 도서의 複寫申請 每1면 50원

19. 公報 또는 도서 이외의 서류의 閱覽申請 每건1회 100원

제7조 (納付方法) ①원출원료, 상표등록권·영업표등록권·업무표장등록권·연합상표등록권·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료 및 지정상품·지정영업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료는 기본심사료와 부가료를 합산 납부하고, 방식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등록사정 통지일로부터 6월내에 최초 3년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특허료 또는 실용신안등록료는 6월내에,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3월내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 3년분에 대한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법 제77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9조 또는 의장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은 拋棄한 것으로 본다.

⑤특허권자·실용신안등록권자 또는 의장등록권자는 4년분 이후부터는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그 전년 납부하여야 한다.

⑥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후까지 存續하는 특허료는 매년 72,000원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영 施行당시 이미 납부된 特許料·登錄料 및 手數料는 終前의 규정에 의한다.